공개용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1-1호)

2022. 4. 14.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조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가격,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및 가격 등 산업피해지표는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 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 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은 1,000 또는 10,000 등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 (%)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등으로 표시함

무역위원회 의결서

2022.4.14. 의결 제2022-4호

조사번호 : 구제 23-2021-1호

안건명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최종판정

신청인: 제일씨앤피 주식회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3길 22-14

피신청인 : 1. 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이하 "러차이")

West Industrial Zone, Taihu Road, Huzhuang Town, Gaogang
District, Taizhou, Jiangsu, People's Republic of China

- 2.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이하 "코닥") 및 그 관계사¹⁾
 - 308 Wengjiao Road, Xinyang Industrial Area, Haicang District, Xiamen, Fujian, People's Republic of China
- 3. 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이하 "화평") 및 그 관계사2)
 - 777 Longxing Avenue, Machinery Park, Tongliang Industrial Park, Chongq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 4. 그 밖의 공급자

¹⁾ 코닥의 관계사: Kodak (China) Investment Co., Ltd.(이하 "코닥 인베스트먼트"), Kodak Korea Ltd.(이하 "코닥 코리아"), Eastman Kodak Company(이하 "이스트만 코닥"),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이하 "화광"), 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이하 "화광 난양"),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이하 "화광 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이하 "종인"), 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이하 "아그파 화광"), 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이하 "화푸"), 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이하 "코닥 일렉트로닉")등 10개사이며.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²⁾ 화평의 관계사 : 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이하 화평PM")이며,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 1. 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한다.
-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러차이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10%
 - 코닥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0%
 - 화평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61%
 - 그 밖의 공급자 : 4.87%
- 3. 화평의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는 수락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이유

제일씨앤피 주식회사(이하 "신청인")가 '21.3.4.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덤핑사실 및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법규에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3), 제52조4) 및 제54조5),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9항제1호6, 제63조제1항 및 제4항7), 제65조제1항 및 제2항8), 제68조제1항9)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덤핑으로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과 화펑의 수출가격 인상 제의를 수락하지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³⁾ 관세법 제51조: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⁴⁾ 관세법 제52조 : "①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항 생략)"

⁵⁾ 관세법 제54조 :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약속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항 생략)"

⁶⁾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⁷⁾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4항: "①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5.호 생략)",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⁸⁾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2항: "①·····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⁹⁾ 관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는 때에는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음

Ⅰ. 배경

신청인은 '21.3.4.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 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 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1.4.26.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인 제일씨앤피(주) 1개사이며, 조사실은 동사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주식회사 더성도(이하 "더성도") 등 국내 수입자 14개사와 주식회사 한영문화사(이하 "한영문화사") 등 국내 수요자 17개사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중국의 러차이, 코닥, 화평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¹⁰)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1.11.18. 본 건 반덤핑 조사의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최종덤핑률 잠정 산정내역 등 덤핑률 심사자료에 대하여는 '21.12.27. 이해관계인 통보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중간보고서 공개본을 '22.3.14.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¹⁰⁾ 선정된 공급자들의 대한국 수출물량 비중이 각각 15% 이상인 것에 비해, 차순위 공급자들의 비중은 한자리수로 낮아 전체비중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상위 3개사만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Ⅱ. 조사대상물품, 국내 동종물품,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¹¹⁾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관보에 게재된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7호('21.4.26.)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더블레이어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¹²) (Presensitized Aluminum Plate with Double-layered Coating for Offset Printing)이다. 조사범위는 알루미늄판의 표면을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 층인 것이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¹³) 및 재생판¹⁴)은 제외된다. 조사대상물품의 세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는 HSK 3701.30.9100이다.

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은 옵셋인쇄를 위한 인쇄용 판으로 사용되며,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물리적 특성으로는 해상도¹⁶⁾, 망점재현도¹⁷⁾, 광감도¹⁸⁾ 등이 있다.

¹¹⁾ 관세법 제60조제1항 : "무역위원회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제60조제3항: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2) &#}x27;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옵셋인쇄판'으로 통칭한다.

¹³⁾ Photopolymer Violet Plate : 높은 인쇄속도를 요구하는 고속 신문인쇄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에만 사용되므로 수요가 많지 않고, 국내산업이 생산하지 않아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¹⁴⁾ 이미 사용(현상)한 옵셋인쇄판을 표면처리만 다시 해 판매하는 재활용판으로,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¹⁵⁾ 조사보고서 p.3

^{16) (}Resolution) 해상도가 높을수록 인쇄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0미크론(1미크론= 1/1000mm) 이하의 선 굵기를 선명하게 재현하면 매우 높은 해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17) (}Dot gain) 작은 망점을 재현할수록 인쇄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면적내의 농도를 "%망점"으로 표현함. 예컨대 1%망점은 전체 면적 중 1%만 망점이 차지하고 99%는 여백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점의 %가 작을수록 작은 망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쇄판의 망점재현도가 5%이하이면 매우 높은 망점재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18) (}Photo sensitivity) 감광성 물질이 빛 또는 레이저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하며, 인쇄판이 적은 빛 에너지에 빠르게 반응할수록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약품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 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 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품명,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가. 품명 및 조사범위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과 대체사용할 수 있으며, 국 내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을 포함한 모든 옵셋인쇄판이 동종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싱글레이어 옵셋인쇄판도 동종물품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그 근거로 조사대상물품인 더블레이어 인쇄판은 원래 동종물품에 포함되는 싱글레이어 인쇄판 대비 내쇄력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국내 시장은 이러한 점보다는 중국산 싱글레이어 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더블레이어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동종물 품과의 가격경쟁도 심화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수요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¹⁹⁾ 조사보고서 pp.12~21

²⁰⁾ 조사보고서 pp.12~13

조사실은 더블레이어 제품과 싱글레이어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수급변 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양 제품 간에 대체사용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국내에 시판 중인 옵셋인쇄판은 노광 및 현상을 위한 광원, 현상액, 출력장비 등이 상이한 CTCP 제품과 서멀(Thermal) CTP 제품이 있는데, 이들 제품 각각에는 감광층의 수가 하나인 싱글레이어 제품과 두개인 더블레이어 제품이 모두 생산되고 있는 점, 신청인 또한 이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고, 양 제품의 관세분류코드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은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해상도 (resolution), 망점재현도(dot gain), 광감도(photo sensitivity)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그 근거로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중 화평, 화광 등 일부 업체의 제품과 신청인의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을 자체 비교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동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치가 대등한 수준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수요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옵셋인쇄판의 물리적 특성 비교방법을 반박하거나,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 특성 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용도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옵셋인쇄에 사용되는 소모재로서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용도의 차이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²¹⁾ 조사보고서 p.13

²²⁾ 조사보고서 pp.13~14

²³⁾ 조사보고서 p.14

라. 제조공정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신청인은 알루미늄 표면처리 가공을 거쳐 표면에 감 광재 도포 및 건조 후 최종적으로 재단 및 포장되어 출하되는 제조공정 전체에 걸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공정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수입자는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제조공정 전체에 대하여 일부 중국산 제품과 국내생산품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재료에 실질적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용되는 감광액의 차이, 판재의 코팅 및 처리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제품에 대한 평판과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제조공정이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처리를 거친 후 감광액 도포와 건조 단계를 거쳐, 재단 및 포장되어 판매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조사실은 수입자측에서 주장하는 제조공정 상의 기술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단순히 특정 공정에 대한 기술력의 차이만으로는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제조공정 상에 실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 및 수요자측 의견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주)세일포트마 등 일부 수입자들은 신청인이 물리적특성 외에 더블레이어 인쇄판과 싱글레이어 인쇄판의 중요한 차이점인 내쇄력에 대한 비교 없이 품질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입자들은 내쇄력 측정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부재하고, 수요업체

²⁴⁾ 조사보고서 pp.14~16

²⁵⁾ 조사보고서 pp.16~19

들에 따라서 요구되는 내쇄력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주)더성도 등 일부 수입자들은 정확한 품질 비교를 위해서는 LOT별 (생산기간별) 제품의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여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이한 생산일자의 제품에 대해 동일 조건(동일 업체)에서 실시한 인쇄결과 비교, 양 제품을 모두 사용한 업체의 증언을 통한 간접비교 등의 방식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더성도 등은 일부 중국 공급사에서 생산하는 "무현상판"은 현상과정이 생략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생산품 과는 품질 및 가격 차이 또는 사용용도, 생산능력, 친환경성 등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의견

상기와 같은 수입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국내에서 조사대상물품인 더블레이어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근본적인 요인은 내쇄력이 아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 싱글레이어 제품 대비 그렇지 않은 더블레이어 제품의 상대적 가격 하락에 있다고 반박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수입자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종물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대등한 내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입증하기 위한 내쇄력 관련 자체 품질비교 실시 결과를 조사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은 LOT별 품질 안정성의 검증은 1년 이상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조사에 활용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대체수단으로서 수요자가 다년간 동일제품을 구매하였다면 품질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제품의 거래처의 연도별 구매물량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보고서²⁶⁾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내쇄력의 차이가 존 재한다는 일부 수입자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간

²⁶⁾ 조사보고서 pp.16~19

내쇄력의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품질의 안정적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수입자 양측 모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차이를 보여주는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양자간 공개 비교방법의 제시 등 추가적인 의견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수입자측의 설명과 같이 무현상 옵셋인쇄판은 현상액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가격대가 높다는 특징이 있으나, 해당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생산품과 인쇄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실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차이 유무에 대해서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리적 특성 비교테스트결과, 내쇄력에 관한 비교테스트결과 및 LOT별 안정성 입증을 위한 거래업체 자료 등 증빙자료를 조사실에 제출한 반면 수입자측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바. 기타

조사보고서²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생산품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조 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국내 동종물품 관련 종합 검토

조사보고서28)에 의하면,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제

²⁷⁾ 조사보고서 p.19

²⁸⁾ 조사보고서 p.20~21

조공정, 품질과 소비자평가 등에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상이한 주장을 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과 수입자측으로부터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초로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수입자측으로부터는 실질적 차이를 입증하는 객 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반면 신청인측은 물리적 특성, 품질(내쇄 력) 및 소비자평가에 대한 비교테스트 결과 및 국내생산품 거래실적을 증빙자료 로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그 사이에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내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대체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상기 검토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품명 및 범위,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용도, 제조공정 등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되어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어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29)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며,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사대상물품 주무부처 검토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은 동종물품의 유일한 국내생산자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건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유일한 국내생산자인 신청인의 생산시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동종물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국내산업이 존재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조사보고서30)에 따르면, 신청인의 회사가 법적으로 존속중이고, 화재 발생 이후에도 동종물품의 기존 보유 재고를 국내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해왔으며, 신청인은 현재 생산시설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22년 6월말 또는 그 이후에는 동종물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20년 국내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전부(100%)를 차지하는 국내생산 자임을 감안하여, 본 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내산업"은 제일씨앤피(주)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 사업으로 결정한다.

²⁹⁾ 조사보고서 pp.22~23

³⁰⁾ 조사보고서 p.23

4.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조사신청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자료 중에서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조원가, 비공개된 회계자료 등을 포함하며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이다.

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 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 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비밀취급 여부 검토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 관 런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³¹⁾ 조사보고서 pp.25~28

Ⅲ.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조사보고서32)에 의하면,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28개 공급자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덤핑사실 조사 및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33)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34)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해 대한국 수출비중 상위 3개사인 '러차이', '코닥', '화펑'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1.5.17. ~5.18.)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사참여 신청기간³⁵) 동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³⁶)에 따른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한 공급자는 없었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21.4.26.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

³²⁾ 조사보고서 p.29

³³⁾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전략) 당국은 그 선정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중략)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³⁴⁾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략)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³⁵⁾ 조사참여 신청기간 : '21. 4, 26. ~ '21.5. 17.

³⁶⁾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전략) 부당하게 당국에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대응이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³⁷⁾ 조사보고서 pp.29~31

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1.5.31.~6.3.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1.6.8.이었던 답변기한을 '21.6.22.로 2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러차이과 코닥는 '21.6.17. 답변기한의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각각 '21.6.25., '21.6.29.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1.7.15. 화평에게 원답변서의 검증을 위한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화평은 '21.7.22.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1.7.26.이었던 답변기한을 '21.7.29.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화평은 연장된 기한 내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21.7.28. 러차이 및 코닥에게 원답변서의 검증을 위한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러차이 및 코닥은 답변기한인 '21.8.9.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제415차 무역위원회('21.9.16.)에서 의결한 예비덤핑률의 산정내역을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에게 통보('21.9.28.)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21.9.28.~10.8.)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1.10.26. 예비덤핑률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온라인)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신청인측 대리인, 조사 대상공급자측 대리인)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1.11.22.~12.2.에는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 실사 검증38)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최종덤핑률(안)을 각 조사대상공급자에게 통보 ('21.12.27.)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1.12.27.~2022.1.3.)를 제공하였다. 또한, 2022.2.16. 최종덤핑률(안) 관련 이해관계인회의(온라인)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신청인측 대리인, 화평측 대리인)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³⁸⁾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으로 현지 파견 실사가 곤란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위임을 받은 국내 대리인 대면 조사 및 중국 현지 조사대상공급자 온라인 실사를 실시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관세법시행령 제58조, 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조사보고서39)에 따르면 러차이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타이저우(泰州)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특수관계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차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 모두 비관계거래처에 대한 직접판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실은 러차이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의 검토결과와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특히, 실사40)시 확인된 수출용 팔레트와 내수용 팔레트의 차이41)에 대해서는 러차이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공개되어 있는 훈중 팔레트 가격정보와 일반 팔레트의 가격정보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러차이에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1.4.26~'21.6.25)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타오바오와 같은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통하여 비교점검하였다42).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의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러차이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실이 WTO 협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³⁹⁾ 조사보고서 pp.32~38

^{40) &#}x27;21.11.30.~12.2.간 러차이 온라인 실사 및 국내대리인 대면 실사를 실시하였다.

⁴¹⁾ 러차이는 수출용으로는 훈증을 거친 팔레트를 사용하였고, 내수용으로는 일반 팔레트를 사용하였다.

⁴²⁾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2부터 제6조까지는 답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 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종류, 두께, 이미지 면의 처리방식, 현상 약품의 사용여부, 민감도, 해상도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러차이가 이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⁴³⁾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제시한 CCN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러차이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특수 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신용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 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러차이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해상운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및 수수료 등을 조정요소로서차감하였다. 아울러, 실사시 내수용 포장에는 일반 팔레트를 사용하는 반면한국수출용에는 훈증 팔레트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러차이가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최대 온라인 오픈마켓타오바오에 공개되어 있는 훈증 팔레트와 일반 팔레트의 가격정보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두 팔레트의 구매차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포장비용차액으로 추가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러차이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44)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4.1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 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⁴³⁾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1.4.26.~5.24.)를 제공하였다.

⁴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나.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45)에 따르면 코닥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샤먼(廈門)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다수의 관계사46)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관계사를 통해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으며, 코닥의 최대주주이자 생산자 겸 수출자인 화광도 직접 또는 관계사들을 통해 내수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고 한국에는 직접 판매하였다.

조사실은 코닥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의 검토결과와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특히, 실사47)시 확인된 수출용 팔레트와 내수용 팔레트의 차이48)에 대해서는 코닥 측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공개되어 있는 훈증 팔레트 가격정보와 일반 팔레트의 가격정보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코닥과 그 관계사에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1.4.26~'21.6.29)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있다고 통지 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타오바오와 같은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통하여 비교점검하였다49).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의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코닥 및 그 관계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실이 WTO 협

⁴⁵⁾ 조사보고서 pp.39~48

⁴⁶⁾ 코닥 인베스트먼트, 코닥 코리아, 이스트만 코닥, 화광, 화광 난양, 화광 바오리, 종인, 아그파 화광, 화푸, 코닥 일렉트로닉

^{47) &#}x27;21.11.22.~11.24.간 코닥 및 그 관계사의 온라인 실사 및 국내대리인 대면 실사를 실시하였다.

⁴⁸⁾ 코닥과 그 관계사는 수출용으로는 훈증을 거친 팔레트를 사용하였고, 내수용으로는 일반 팔레트를 사용하였다.

⁴⁹⁾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2부터 제6조까지는 답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 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종류, 두께, 이미지 면의 처리방식, 현상 약품의 사용여부, 민감도, 해상도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코닥 및 그 관계사가 이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50)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제시한 CCN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코닥 및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검증,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창고비용, 핸들링 비용, 내륙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를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코닥 및 그 관계사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해상운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및 수수료 등을 조정요소로 차감하였으며, 코닥이 특수 관계사인 코닥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물량에 대해서는 코닥 코리아의 직·간접판매비와 이윤을 조정하였다. 아울러,실사시 내수용 포장에는 일반 팔레트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수출용에는 훈증팔레트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닥 및 그 관계사가 이에 대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공개되어있는 훈증 팔레트와 일반 팔레트의 가격정보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두 팔레트의 구매차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포장비용 차액으로 추가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코닥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¹)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⁵⁰⁾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1.4.26.~5.24.)를 제공하였다.

⁵¹⁾ Cost, Insurance and Freight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6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 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다. 화평(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52)에 따르면 화평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서 충칭(重慶)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는 화평의 최대주주이자 관계사인 화평PM을 통하거나 직접 비관계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대한국 수출은 비관계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화평 및 관계사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의 검토결과와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특히, 실사53)시 판매관리비(SG&A)와 관련하여 화평의 자료에서는 세금관련 항목 누락, 총운반비와 운반비 세부내역의 합계 불일치, 사업홍보비 배부 오류54)를 확인하였으며, 관계사인 화평PM의 자료에서는 총 금융비용과 세무신고서상 금액 불일치, 대손상각비누락, 세금관련 항목의 누락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화평 및 그관계사의 SG&A자료를 부인하고 이용가능한 자료55)로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인 러차이와 코닥의 SG&A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위원회는 WTO반덤핑협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6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화평 및 그 관계사가 덤핑사실조사의 중요자료인 SG&A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조사실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⁵²⁾ 조사보고서 pp.49.~57

^{53) &#}x27;21.11.25. 26. 29.에 화평 및 그 관계사에 대한 온라인 실사 및 국내대리인 대면 실사를 실시하였다.

⁵⁴⁾ 화평은 원답변서에서 사업홍보비를 내수시장 비용으로 설명하였으나, 판매관리비 항목에서는 한국시장 및 제3국시장에도 배부하였다.

⁵⁵⁾ 조사질의서에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러차이와 코닥의 SG&A 평균값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에 있어, 위원회는 두 회사가 금번 조사의 또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이자,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자 겸 판매자로서 화평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점, 두 회사의 SG&A 자료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화평은 SG&A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사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2022.1.3.)하였다. 첫째, 관계사인 화평PM은 내수 판매활동만 있을 뿐 생산활동이 없기 때문에, 화평PM의 SG&A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둘째, SG&A자료 전부를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 화평에 대해 지적한 3개항목만 측정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여 덤핑률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셋째 문제제기 된 화평의 3개 항목도 인위적 누락이나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고화평과 무역위원회간 적용논리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위 화평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 회계원칙, 관련법 규정, 타 조사대상 공급자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는 제조원가(Cost of Manufacturing)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SG&A)를 가산한 금액으로서, 화평PM이 내수 일부에 대한 판매활동을 하였으므로 화평PM의 SG&A는 총 생산원가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화평 및 그 관계사가 덤핑사실 조사의 중요자료인 SG&A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WTO반덤평협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64조 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 셋째, 다른 조사대상공급자들은 모두세금 및 대손상각 항목 등을 누락없이 보고한 점, 조사실이 화평에 제공한 질의서 Section A('작성지침')에 답변서 작성에 관한 질의 혹은 의심이 되는 사항은 조사관과 협의토록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음에도 화평측이 SG&A 작성에 관해 어떠한 질의나 협의 없이 답변서를 작성한 점, 실사과정에서 그 답변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일반 회계원칙, 관련법 규정, 타 조사대상공급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G&A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사용에 관한 화평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

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종류, 두께, 이미지 면의 처리방식, 현상 약품의 사용여부, 민감도, 해상도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화평 및 그 관계사가 이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56)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제시한 CCN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화평 및 그 관계사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다만, 내륙운임의 경우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위당 비용을 재계산하여 이를 적용하였다57).

또한, 조사실은 화평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를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58)

과세가격은 화평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IF⁵⁹)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7.61%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 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⁵⁶⁾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1.4.26.~5.24.)를 제공하였다.

⁵⁷⁾ 화평측은 운반비 계정(6601.08)상 총액을 현상액 등을 포함한 전사 제품의 판매금액 기준으로 1차배분한 후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수량으로 단위당 내륙운송비를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1차배분 방식은 중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운반비가 발생하는 통상의 현실과 달리 가격 높은 제품의 운송비가 더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화평측의 매출 Full List를 징구하여 평방미터(m') 기준으로 운송단가를 재계산하였다.

⁵⁸⁾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 원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이 불일치 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실사과정에서 불일치 사유가 소명되어 보충질의 답변을 수정 자료로 인정하여 적용하였다.

⁵⁹⁾ Cost, Insurance and Freight

4.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조사보고서60)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중국의 러차이에 대하여 4.10%, 코닥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3.60%, 화평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7.61%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5.8조61)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함을 보여준다.

이에 위원회는 위 산정된 덤핑률이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산정된 덤핑률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20.1.1.~12.31.) 중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⁶⁰⁾ 조사보고서 p.58

^{61) &}quot;(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Ⅳ.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의 피해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여야한다.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동종물품 대비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와 덤핑수입품이 국내산업의 등 제반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조사보고서⁶²)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년을 제외한 '18년과 '19년의 2년간 매년 증가하였는데, 기준연도인 '17년 <u>1,000</u>톤에서 '20년 <u>1,810</u>톤으로 3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1.9%였다.

이에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조사보고서63)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로 증가하다가 '20년에는 xx.x%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비교기준연도인 '17년 대비 3년만에 13.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9년 xx.x%로 15.3%p 감소하였고, '20년의 경우 점유율이 전년 대비 0.6%p 증가하여 변동이 미미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21.9% 증가하여 국내소비(연평균 15.0%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 또한 확대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국내소비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검토하였다.

⁶²⁾ 조사보고서 p.62

⁶³⁾ 조사보고서 pp.63~64

나.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1)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조사보고서64)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8년과 '19년에 걸쳐 매년 전년대비 약 4~5%씩 하락하였고, '20년에는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18년 2.7% 상승하였다가, '19년과 '20년에는 다시 연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조사실은 상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덤핑물품과의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경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조사보고서65)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동종물품 판매가격보다 매년 높은 수준이어서 덤핑물품은 저가판매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조사보고서60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연평균 3.2% 하락하여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연평균 0.6% 하락하여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하락률이 더 낮았으나, 이는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매년 xx.x% 이상이었고 일부 연도에는 제조원 가가 판매가격을 상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생산자가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 대응을 위하여 가격을 신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을

⁶⁴⁾ 조사보고서 pp.66

⁶⁵⁾ 조사보고서 pp.67

⁶⁶⁾ 조사보고서 pp.67~69

것이라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비교한 덤핑물품의 상대가격(가격비율)은 '17년 동종물품 가격의 xx.x% 수준에서 '19년 xx.x% 수준으로 매년 하락하였고, '20년의 경우에는 상대가격(가격비율)이 xx.x%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17년과 비교할 때 x.x%p 만큼 낮은 수준이었던 점, 톤당 가격차이도 xxxxxx⁶⁷)원만큼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조사보고서⁶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제조원가 및 영업이익률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판매가격 수준을 산정하였는데, 연도별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실 제 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의 약 xx%에서 xx% 수준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신청인의 동종물품 부문은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높아 영업적자가 지속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목표판매가격 수준으로 동종물 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여야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 물품의 가격 하락에 따라 동종물품과의 가격차이가 급격히 축소되고, 덤핑물품 과의 경쟁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상실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생산자는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인하를 통하여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에 대응하여 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수입이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⁶⁷⁾ 백(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⁶⁸⁾ 조사보고서 pp.69~70

2.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69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중 <u>10,000</u>톤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동종물품 생산량은 '17년 <u>10,000</u>톤에서 '18년 <u>11,100</u>톤으로 11.0% 만큼 일시 증가하였으나, '19년에는 18.0%, '20년에는 1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동일한 수준이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일시 상승하였다가, '19년 xx.x%, '20년 xx.x%로 재차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7.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20년 국내 제조업 전체의 평균 가동률은 약 70%대였던 것에 비하면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판매량과 국내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에 의한 동종물품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 였다.

나.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⁷⁰⁾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17년 <u>1,000</u>톤에서 '18 년 3.7% 감소, '19년 17.4% 감소, '20년 10.4% 감소로 연평균 10.6% 만큼 매년 감 소하였다.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7년 xxx톤에서 '18년과 '19년에 걸쳐 증가하다가 '20년에는 3.8% 만큼 감소하였지만, 조사대상기간 전체로는 연평균 34.9% 증가하였고, 재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xx.x%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⁶⁹⁾ 조사보고서 p.72

⁷⁰⁾ 조사보고서 pp.73~74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판매량의 증가와 동종물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이, 내수시장에서 덤핑물품과 동종물품 간 가격 격차 축소에 따른 경쟁 심화, 덤핑물품의 내수시장점유율 확대와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축소 등을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기에 의하면,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7년 기준 각각 xx.x%와 xx.x%로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18년과 '19년에 걸쳐 덤핑물품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년에는 덤핑물품의 점유율이 2.9%p 감소하고 동종물품 점유율은 0.6%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전체로는 덤핑물품의 점유율이 13.5%p 증가하여 동종물품의 점유율 감소(15.3%p)와 명확히 대비되었다.

조사실은 '20년 동종물품 점유율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감소한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덤핑물품 점유율 증가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조사보고서72)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18년과 '19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6.4%, 6.6% 감소하였으나 '20년에는 7.9% 증가하였다.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매년 xx.x% 이상이었으며,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경비가 xx.x~xx.x%, 노무비가 xx.x%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여 재료비가 총 제조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료비의 증가 또는 감소는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매년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⁷¹⁾ 조사보고서 p.75

⁷²⁾ 조사보고서 pp.76~77

보아 판매가격의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판매가격의 xx%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동종물품 생산 가동률과 국내시장 점유율은 낮아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 변동이나 덤핑물품 가격하락 등의 요인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판매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생산자는 '18년에는 톤당 제조원가가 6.4% 하락하였으나, 제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았던 '17년의 상황을 일부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종물품 판매가 격을 2.7% 인상하였으며, '19년에도 톤당 제조원가가 6.6% 하락하였으나 이를 일부만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1.2%만 인하하였다. '20년에는 국내소비가 급감하고, 판매량과 점유율, 가동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톤당 제조원가가 7.9% 상승하였으나 판매가격을 오히려 3.3% 인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와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원인은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인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량, 가동 률, 시장점유율 등이 악화되고 적정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판매가격 수 준으로의 가격 인상도 어려웠던 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보고서⁷³)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최종덤핑률은 3.60~7.14%로 미소마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덤핑마진은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과 동종물품과의 가격차이 축소에 반영됨으로써 동종물품 가격 및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조사보고서74)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손익은 '17년 xxxxxx 원75) 적자였다가 '18년과 '19년에 적자폭이 축소되었다가 '20년에는 xxxxxx원 적자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었고, 영업이익률도 '17년 - xx.x%에서 이후 호전되

⁷³⁾ 조사보고서 p.78

⁷⁴⁾ 조사보고서 p.78~79

⁷⁵⁾ 십만(100,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다가 '20년 - xx.x%로 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생산자의 투자수익률⁷⁶)은 '17년 - xx.x%에서 '18년과 '19년에 걸쳐 호전되다가 '20년에는 - xx.x%로 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⁷⁷).

조사보고서78)에 의하면, 동종물품에 관련된 영업활동 현금흐름(현금수지)는 '17년 xxxxxx원에서 '18년 xxxxxx원⁷⁹)으로 급감 후 '19년 xxxxxx원, '20년 xxxxxx 원으로 일부 호전되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전체로는 연평균 17.9% 감소하였다.

바.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및 성장성

조사보고서⁸⁰⁾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7년 <u>100</u>명에서 '20 년 <u>73</u>명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1인당 연평균임금도 '17년 <u>10,000,000</u>⁸¹⁾원에서 '18 년 <u>10,140,000</u>원으로 1.4% 증가하였으나, '19년과 '20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조사대 상기간 동안 연평균 2.7% 감소하였다.

또한, 1인당 생산량과 1인당 매출액은 각각 '18년에 20% 이상 증가하였다가 '19년과 '20년에는 감소하여 각각 연평균 0.2%, -0.3% 변동하여 변화가 미미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18년과 '19년에는 영업적자 일부 개선과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라 각각 68.5%, 55.7% 증가하였다가 '20년에는 영업적자 확대와 인건비 절감 노력에 따라 71.6% 감소하여 연평균 9.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82).

아울러,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였고, 영업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시장점유율과 가동률 또한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악화되고 성장성 또한 저해된 것으로 검토되었다⁸³).

⁷⁶⁾ 투자수익률(%) = 영업이익 ÷ 투자자산총액

⁷⁷⁾ 조사보고서 p.79

⁷⁸⁾ 조사보고서 p.80

⁷⁹⁾ 만(10,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⁸⁰⁾ 조사보고서 pp.80~81

⁸¹⁾ 천(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⁸²⁾ 조사보고서 p.82

⁸³⁾ 조사보고서 p.83

사.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조사보고서⁸⁴)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동종물품의 매출액은 연평균 10.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생산자는 매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지출을 하였는데, 설비투자의 경우 주로 '18년과 '19년에 생산설비 도입,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장치 구입과 공사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개발은 감광액 제조, 현상기 및 출력기 구입 등 제조기술 개발 목적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85).

조사실은 매출액 감소, 영업적자 지속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생산자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매년 투자를 지속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자구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아. 종합 검토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 관련 지표들에 대하여 시장점유율의 미미한 상승(0.6%)을 제외하면, 생산량, 가동률, 내수판매량 및 판매금액, 재고율, 시장점유율, 제조원가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 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동종물품과 관련하여 확인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국내산업의 영업손 익, 투자수익률, 현금수지, 고용 및 임금, 1인당 부가가치,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거의 모든 경영지표에 걸쳐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⁸⁴⁾ 조사보고서 p.84

⁸⁵⁾ 조사보고서 p.84

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동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여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와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경 영지표의 검토를 통하여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검 토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조사보고서⁸⁶⁾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17년 <u>1,000</u> 톤에서 '18년 75.8%, '19년 24.2% 급증하고 '20년에는 17.1% 감소한 <u>1,810</u>톤이었지만 여전히 '17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약 xx%에서 xx% 중반까지 확대되었고, 국내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 후반에서 xx% 초반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덤핑물품의 물량 효과는 동종물품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가동률 하락 등의 피해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비록 동종물품보다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었으나, 가격하락폭은 동종물품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이 진행된 결과 '17년 동종물품의 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덤핑물품의 상대적 가격

⁸⁶⁾ 조사보고서 pp.86~89

비율이 xxx.x였다가 '18년에는 xxx.x, '19년에는 xxx.x, '20년에는 여전히 '17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xxx.x로 낮아져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격비율이 8.8%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덤핑물품의 가격하락은 동종물품에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고 적정판매가격으로의 가격인상의 억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 물품의 국내생산량과 판매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연평균 9.7%, 1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생산 가동률 하락,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영업손실 지속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고용 및 임금 축소와 설비투자 여력 감소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어려움 또한 가중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효과와 가격하락에 따른 효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 및 판매, 국내시장 점유 율, 영업손익 등 국내산업의 제반 경영지표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인과관 계가 일응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1)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의 물량 및 가격

조사보고서⁸⁷에 의하면,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수입량은 '17 년 <u>1,000</u>톤에서 '20년 <u>4,615</u>톤으로 연평균 66.5% 증가하였으나, 국내시장 점유율은 x.x%에서 x.x%로 1.8%p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국산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은 '17년 국내 동종물품의 xxx.x% 수준에서 '20년 xxx.x%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국내 동종물품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이나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 그리고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가격변화가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상승의 억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⁸⁷⁾ 조사보고서 p.91

(2) 국내소비 변화

조사보고서⁸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 규모는 '18년과 '19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가 '20년에는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매년 국내소비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동종물품의 판매는 국내소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국내소비가 '18년 52.1%, '19년 16.4% 증가하는 동안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각각 3.7%, 17.4% 감소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소비의 변화가 동종물품의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3) 기술발전

조사보고서89)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들은 덤핑물품 중 일부 제품에 있어서 중국측 공급자가 국내산업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쇄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소위 "무현상판" 제품은 친환 경성과 운영비 절감 등 장점이 있고, 현재 일부 중국측 공급자만 국내시장에 시 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생산자는 "무현상판" 생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사 또한 무현상판 생산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실시한 시제품 인쇄테스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수입자측과 국내생산자측 간의 상반된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는 바, "무현상판"이 친환경성, 운영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점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⁸⁸⁾ 조사보고서 p.92

⁸⁹⁾ 조사보고서 pp.93~94

다만,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만으로는 "무현상판" 생산에 있어 일부 수입자들과 국내생산자 간의 제조기술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차이가 동종물품 판매 및 국내산업의 피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4) 국내산업의 수출

조사보고서90)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수출물량은 '17년 <u>1,000</u>톤에서 '18년 <u>1,703</u>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19년 <u>1,121</u>톤, '20년 <u>811</u>톤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준연도인 '17년과 비교하면 '19년 수출물량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고 '20년에는 '17년보다 약 20% 감소하였는데 반해, 같은 기간 내수판매량은 '17년 <u>1,000</u>톤에서 '18년 <u>963</u>톤, '19년 <u>795</u>톤, '20년 <u>713</u>톤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국내산업 수출의 영향에 관련된 아무런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동종물품 수출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한다.

(5) 소결

위원회는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품의 수입물량 및 판매가격, 국내소비의 변화,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요인들은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 감소 및 국내산업 피해 발생에 의미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과한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⁹⁰⁾ 조사보고서 pp.94~95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수입물량이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동종물 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등 수입물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가하였고, 가격 측면에서도 덤핑물품의 가격이 하락한 결과, 동 종물품과의 가격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및 적정가격수준 으로의 가격 상승의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 량, 판매량, 시장점유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산업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가동률 하락, 재고율 상승,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연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 고용 및 임금 감소, 1인당 부가가치 하락, 국내산업의 투자여력 감소 등 다양한 경영지표를 통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에 국내산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서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품, 국내소비의 변화, 국내 동종물품의 해외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요인들은 국내산업 피해에 의미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상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VI.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덤핑률 수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대로 개별공급자별 덤핑률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러차이, 코닥 및 그 관계사, 화평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91), 관세법 제51조92) 등에 의거, 각각 4.10%, 3.60%, 7.61%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그 밖의 공급자⁹³⁾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⁹⁴⁾ 및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⁹⁵⁾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공급자들의 덤핑률을 대한국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4.87%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한편,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한 공급자는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러차이, 코닥, 화평 등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 산정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일부 사용되었는 바,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게 된다.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자료는 일부 덤핑률 산정 과정에서 필요최소한도로 활용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러차이, 코닥, 화평의 최종 덤핑률을 對한국수출물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⁹¹⁾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당국은 (중략)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후략)"

⁹²⁾ 관세법 제51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93) &#}x27;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94) &}quot;(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95) &}quot;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또한,「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 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 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 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이익률⁹⁷⁾ 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 핑물품의 내수시장 판매가격 및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의 가중평균치를 각각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14.30%의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적용한 산업피해 구제수준 산정방식과 그 산정결과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14.30%의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3.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WTO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

⁹⁶⁾ 조사보고서 pp.100~101

⁹⁷⁾ 조사실은 덤핑수입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3년에 국내산업(신청인)이 국내시장에서 실제 달성한 영업이익율 8.4%를 목표영업이익률로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의 이의 제기는 없었음.

건이 충족된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조사당국이 결정하며,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이에 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수준과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률을 비교하여 보다 낮은 율을 선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급자별로 3.60~7.61%로 산정한다.

< 덤핑률 수준과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최종 덤핑률 (dumping margin)		최종 부과 수 준
중국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4.10%	- 14.30%	4.10%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및 그 관계사	3.60%		3.60%
	화평(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7.61%		7.61%
	그 밖의 공급자	4.87%		4.87%

Ⅶ. 가격약속 제의 내용 및 검토

위원회는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의한 경우, 예비판정이후 서면으로 제의되었는지 여부, 가격인상약속이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제거될 수준인지 여부, 기타 법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가격약속의 수락여부를 건의한다.

화평은 2022.1.10. 가격약속제의서를 제출하고, 화평의 '20년도 조사대상물품 대한국수출가격(CIF)에 최종덤핑률 7.61%를 반영한 최저가격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제의서에는 약속수락 전 계약·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약속회피행위 금지,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우회판매 금지, 정확한 보고자료 제출, 약속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허용,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우회판매 금지, 상황변동에 따른 약속의 재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가격약속 제의가 예비판정 이후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약속의 제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화평의 약속 제의는 예비판정('21.9.16.)이 있은 후 '22.1.10.에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화평의 약속 제의가 예비판정 이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제출 시기 및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가격인상 약속이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제거될 수준인지 여부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가격인상 약속은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준이어야 한다.

⁹⁸⁾ 조사보고서 p.104.

조사보고서99)에 의하면, 옵셋인쇄판의 주요원재료100)인 알루미늄의 평균 국제가격은 '20년도 톤당 1,702달러에서 '21년도 2,476달러로 약 774달러(45.4%) 상승하였으며, 2022.3.7.에는 톤당 3,985달러로 사상최고가를 기록101)하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 그 국제시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평이 제시한 최저가격약속 수준은 '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원재료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고정가격¹⁰²)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격변동과 도 연동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평의 가격인상 약속이 원재료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가격 변동과도 연동되지 않으므로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제거될 수준 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3. 기타 법정요건103)의 충족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호 내지 7호는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보고서¹⁰⁴⁾에 의하면, 화평의 가격약속 제의서에는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2호),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3호), 제 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 용(4호),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5호),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6호),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

⁹⁹⁾ 조사보고서 pp.104~105.

¹⁰⁰⁾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알루미늄이 제조원가(CO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xx.xx%이다. ('20년기준)

¹⁰¹⁾ 런던금속거래소(LME) Cash 기준

^{102) &#}x27;20년도의 對한국수출 CIF가격×(1+7.61%)

¹⁰³⁾ 앞서 다룬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1항의 1호(수출가격이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제외한 2호 내지 7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¹⁰⁴⁾ 조사보고서 p.105.

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7호)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화평의 가격약속 제의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호 내지 7호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기타 법정요건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4.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현재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이 '20년도 대비 20%이상 상승한 상황¹⁰⁵⁾으로, '20년도 평균가격에 덤핑률 7.61%만 가산한 화펑의 최저가격 제안은 매우불합리하며, 수락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 ('22.1.19.)하였다.

5. 종합 검토의견

화평의 가격제의서는 적기에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형식적 측면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화평이 제시한 최저가격은 '20년도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정가격으로서 주요 원재료(알루미늄)의 가격인상 등 '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가격상승분이 반 영되어 있지 않고 향후의 가격변동과도 연동되지 않는다.

이에, 위원회는 화평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준은 관세법 제54조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 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제1호의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¹⁰⁵⁾ 신청인측은 전체 옵셋인쇄판(HSK 3701.30.9100)에 대한 '20년도 및 '21년도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기초로 '21년 12월 가격이 '20년 평균가격 대비 약 23.3% 상승한 것으로 추산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Ⅷ.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1. 국내생산자 화재 발생에 따른 영향

조사보고서¹⁰⁶⁾에 의하면, '21.8.26. 신청인의 생산시설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본 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종물품의 신규생산이 중단되어 생산시설 복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수입자측은 신청인의 생산시설 복구완료 및 상업적 생산의 재개 시점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기간 소요가추정되어 본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의 기각 또는 부과 유예를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신청인은 충분한 생산시설 설치 경험이 있고 복구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없으므로 '22년 6월초까지 공장건물 재건축 및 신규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하고 생산 테스트를 거쳐 상업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설비복구계획 및 진행현황, 소요비용 및 재원마련 방안, 복구작업 진행현황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수입자측과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신청인의 생산시설 복구 및 상업적 생산과 판매의 재개에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대로 본 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결정기한인 '22.10.26. 이전에 생산 및 판매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인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며, 복구기간 동안 동종물품 재고를 보유하면서 국내시장에서 판매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음을 고려하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건의하는데 법적 장애요소가 없다고 판단한다.

¹⁰⁶⁾ 조사보고서 pp.108~111

2.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107) 검토108)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덤핑수입물품 중 특정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국내생산자의 생산실적 여부, 생산 가능 여부,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 가능 여부, 우회덤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가. 더블레이어 서멀판(Thermal plate)109)

조사보고서¹¹⁰)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는 신청인이 아직까지 안정적 품질의 더블레이어 서멀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품실적도 미미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였으므로 안정적 품질확보와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 서멀판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신청인은 일부 수입자 측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19년 2차 코팅 및 건조라인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년 xx개 국내거래처와 xx개 해외거래처에 공급한실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중국산 서멀판이 신청인이 생산하는 동종물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대체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제외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으로부터 '20년 생산 및 판매 실적, 거래처 리스트 등을 제출 ('21.8.23.)받아 신청인이 더블레이어 서멀판을 생산 가능함을 확인한 바, 이미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더블레이어 서멀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더블레이어 서멀판을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¹⁰⁷⁾ 주식회사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주식회사 더성도, 아그파코리아(주) 등 일부 수입자들은 최초 제출한 의견서(7.8, 7.9)에서 '조사대상 제외', '조사 제외'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미 관보(무역위원회공고 제'21-7호, '21. 4. 26.)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조사개시일로부터 4주간: 4. 26.~5. 24.)을 도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수입자들의 요청취지를 부과제외 이슈로 이해하고 수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장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¹⁰⁸⁾ 본 장에서의 검토는 신청인의 생산시설 화재('21.8.26.)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¹⁰⁹⁾ 적외선 영역의 광원을 사용하는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옵셋인쇄용 판재이다.

¹¹⁰⁾ 조사보고서 p.112.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나. 더블레이어 무현상판(Process-free plate)111)

조사보고서¹¹²)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 및 피신청인¹¹³)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현상판의 관세부과대상 제외를 요청하였다. 첫째, 무현상판은 신청인이 아직 생산 불가능한 제품이고 둘째, 현상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상기, 현상액, 세척수 등이 불필요한 앞선 기술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이며 셋째, 코팅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현재 극소수 글로벌 메이커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감광액만 무현상판 전용 감광액으로 교체하여 코팅한다고 해서 생산할 수 없으며 넷째, 글로벌 메이커의 무현상판은 서멀판 대비 xx~xx%이상 높은 가격이므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수요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제외 의견에 반대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무현상판 시험생산에 성공한 바 있으며¹¹⁴) 둘째, 수입 무현상판이 신청인의 생산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성, 용도, 생산공정 등의 면에서 매우유사하고 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시장에서 상호경쟁하는 동종물품이며 셋째,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글로벌 선발업체만 생산하고 있으나 감광액만 무현상전용 감광액으로 교체하여 코팅하면 생산가능하고 넷째, 무현상판은 가격이비싸지만 현상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제외로 가격적인 메리트¹¹⁵)가생긴다면 과거 중국산 옵셋인쇄판 조사시 더블레이어가 제외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덤핑방지조치의 회피 및 조치효과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가능성 측면에서, 신청인이 '16년 싱글레이어 무현상판을 시험생산했던 점116), 더블레이어 무현상판의 생산계획을 제출한 점117)

¹¹¹⁾ 인쇄과정에서, 노광이후 현상처리 필요여부에 따라 무현상판(process-free plate)와 현상판(non process-free plate)로 구분할 수 있다.

¹¹²⁾ 조사보고서 pp.114~115.

¹¹³⁾ 코닥은 '21.8.13. 무현상판의 부과제외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¹¹⁴⁾ 신청인이 무현상 판재 Test Report(2016.6.8.)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생산설비를 '19년 설치완료한 점을 고려시 이는 싱글레이어 무현상판재에 대한 Test Report이다.

¹¹⁵⁾ 신청인의 의견서 각주에 의하면, "무현상판의 구매가격에서 무현상판의 사용으로 절감되는 현상액 등의 부대비를 제외한 가격이 덤핑반지관세가 부과된 현상판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¹¹⁶⁾ 신청인은 무현상 판재 Test Report(2016.6.8.)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¹¹⁷⁾ 신청인 측은 '국내수입자가 제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의견(2차)에 대한 국내생산자 반박의견서' ('21.8.5.)와 함께 '무현상판 생산계획('21.6.15.)'을 별첨으로 제출하였다. 다만, 생산시설 화재

등을 고려시 국내산업의 생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더블레이어 무현상판은 현상액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고가격대라는 특징이 있으나, 일반적인 서멀 옵셋인쇄판과 출력환경, 주원재료, 용도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점¹¹⁸⁾이 더 많아 경쟁 및 대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우회덤핑 가능성 측면에서 더블레이어 무현상판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은 사실이나 운영비 절감 효과¹¹⁹⁾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의 효과가 더해진다면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우회덤핑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다. 부가적 고려사항으로서 싱글레이어 무현상판의 경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령¹²⁰⁾에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블레이어 무현상판만을 달리취급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가능성,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가능성, 우회덤핑 가능성, 부가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더블레이어 무현상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 의견 (아그파코리아(주)의 자사 수입품 부과제외 요청)

조사보고서¹²¹)에 의하면, 아그파코리아(주)는 자사의 수입품 Adamas(Agfa Thermal Photopolymer Plate)가 환경에 유해한 현상액 대신 중성 세척고무액 (PH7)을 사용하는 점, 현상공정에서 자체개발한 COU(Clean Out Unit)¹²²⁾ 장비를 사용하는 점에서 일반 서멀 제품과 차별되는 친환경제품이므로 부가제외하여

^{(&#}x27;21.8.26.)로 인해 해당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¹¹⁸⁾ 감광단계에서 사용되는 광원(Infra Red)과 레이저 파장(800~850nm)이 서멀 CTP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기존 서멀 CTP용 출력장비(네거티브 출력가능기종)에 투입하여 사용가능하며, 알루미늄 판재로생산된 더블레이어 제품인 점과 옵셋인쇄물 제작이라는 용도 등도 동일하다. [4.국내생산품의동종물품 여부-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3)조사실 검토 참조]

¹¹⁹⁾ 수입자인 주식회사 더 성도는 '무현상판재 더블레이어 반덤핑조사관련 반박의견서'('21.8.12.)에서 무현상판 사용시 1년간 약 xxxx만원의 관련비용 절감을 추산한 바 있다.

¹²⁰⁾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2호, '21.5.3.)

¹²¹⁾ 조사보고서 p.117.

¹²²⁾ 아그파가 자체개발한 현상기의 일종으로, 현상액 대신 중성세척고무액을 사용한 현상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이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신청인은 아그파코리아(주) 측의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Chem-free printing plate인 바, 신청인도 친환경적인 Low Chem판을 생산·판매했던 실적123)이 있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므로 부과제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가능성 측면에서, 비록 아그파코리아(주) 측의 Adamas 제품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도 통상의 제품보다 화학물질의 사용이 적은 Low chem판을 생산·수출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Adamas 제품이 일반 서멀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생산자가 생산하고 있는 서멀판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Low Chem판과 경쟁 및 대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우회덤핑 가능성 측면에서 Adamas 제품도 알루미늄 판재를 주원료로 제작한 옵셋인쇄물 제작용 판재로서 부과제외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우회덤핑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가능성,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다른 모델과의 대체가능성, 우회덤핑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아그파코리아(주)의 수입품 Adamas 제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¹²³⁾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사실의 증빙으로 수출실적 및 상업송장 샘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1.10.21.)

IX.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제2항 등 반덤핑 관련 국내외 규정에서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EU·중국 및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가들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조사대상물품의 영향력 하에서 국내산업의 대응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점, 국내산업이 인쇄, 출판, 포장 등 다양한 전방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 하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5년으로 하여도 산업환경 등이 변할 경우 상황변동재심124) 등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에서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방지관세율(3.6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¹²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무역위원회 의결 제'20-5호('20.3.19)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황변동 재심 최종판정

적용 법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sim 제53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 제65조, 제71조 WTO 반덤핑협정 제1조 ~ 제6조 등

붙임자료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조사보고서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2년 04월 14일

위원장	장승화	Bull &
1120	00-1	-1105
실장	김현철	With the state of
위원	오수원	生午記
위원	김대원	Then
위원	강진구	美罗九
위원	조영진	Jul
위원	이종은	Section 1
위원	현낙희	स ५ ग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 1.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 : West Industrial Zone, Taihu Road, Huzhuang Town, Gaogang District, Taizhou, Jiangsu, People's Republic of China

2. 코닥 및 그 관계사

- (1)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 : 308 Wengjiao Road, Xinyang Industrial Area, Haicang District, Xiamen, Fujian, People's Republic of China
- (2) 코닥 인베스트먼트(Kodak (China) Investment Co., Ltd.)
 - : Zone B, 3rd Floor, Building 8, Jinqiao Office Park, No. 27 Xinjinqiao Road,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eople's Republic of China
- (3) 코닥 코리아(Kodak Korea Ltd.)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DMC 디지털큐브 빌딩 5층
- (4)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 343 State Street Rochester, New York 14650, U.S.A.
- (5) 화광(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 718, South Station Road, Nanyang, Henan, Republic of China
- (6) 화광 난양(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 718, South Station Road, Nanyang, Henan, Republic of China
- (7) 화광 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 Yetang Industrial Park, Shanghu Town, Changshu, Jiangsu, People's
 Republic of China
- (8)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 : Yanjiao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Sanhe, Hebei, People's Republic of China
- (9) 아그파 화광(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
 : Room101 Building? No 558 Kanghua Road Minhang District Shangh
 - : Room101, Building2, No.558 Kanghua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People's Republic of China
- (10) 화푸(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 : Industrial Cluster, Neixiang Country, Henan, People's Republic of China
- (11) 코닥 일렉트로닉(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 : Zone A, Floor 2, Building 6, No. 1510 Chuanqiao Road, Jinqiao Economic & Tech Development Zone, Shanghai, People's Republic of China

3. 화평 및 그 관계사

- (1) 화평(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
 - : 777 Longxing Avenue, Machinery Park, Tongliang Industrial Park Chongq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 (2) 화평PM(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
 - : North side of Shanglong Road, Huilong Industrial Park,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Chongqing, People's Republic of China